

# 「2026년 제27회 여성창업경진대회」참가자 공고

여성 창업가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유망 여성 창업팀의 발굴·성장을 지원하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창업가를 양성하고자 “2026년 제27회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1 대회 개요

### □ 목적

- 혁신 역량을 갖춘 여성 창업팀을 발굴하고, 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을 연계 지원하여 지속할 수 있는 확대 여성 창업가를 양성

### □ 운영주체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후원)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 □ 선정규모

- 총 44팀 포상(창업기업 34팀, 예비창업 10팀)
  - 창업기업 34팀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천만원)
- 선정 창업기업 중 창업 후 3년 미만 수상자 상위 26팀 대상 「도전! K-스타트업 2026」 통합 본선 진출권 부여 예정(여성리그)

□ 모집분야

- 분야(기술·혁신 / 라이프·소비재) 선택 후 전문기술분야 1개 선택
  - (예시1) 기술·혁신 → 웹테크, (예시2) 라이프·소비재 → K-뷰티
  - “그 외 분야(신청자 작성)” 선택 시 기술 분야 참가자 작성

분야	전문기술분야
기술·혁신	웹테크, 바이오·헬스케어, 빅데이터·인공지능(AI), 그 외 분야
라이프·소비재	여성·가족 케어, K-뷰티, K-푸드, 그 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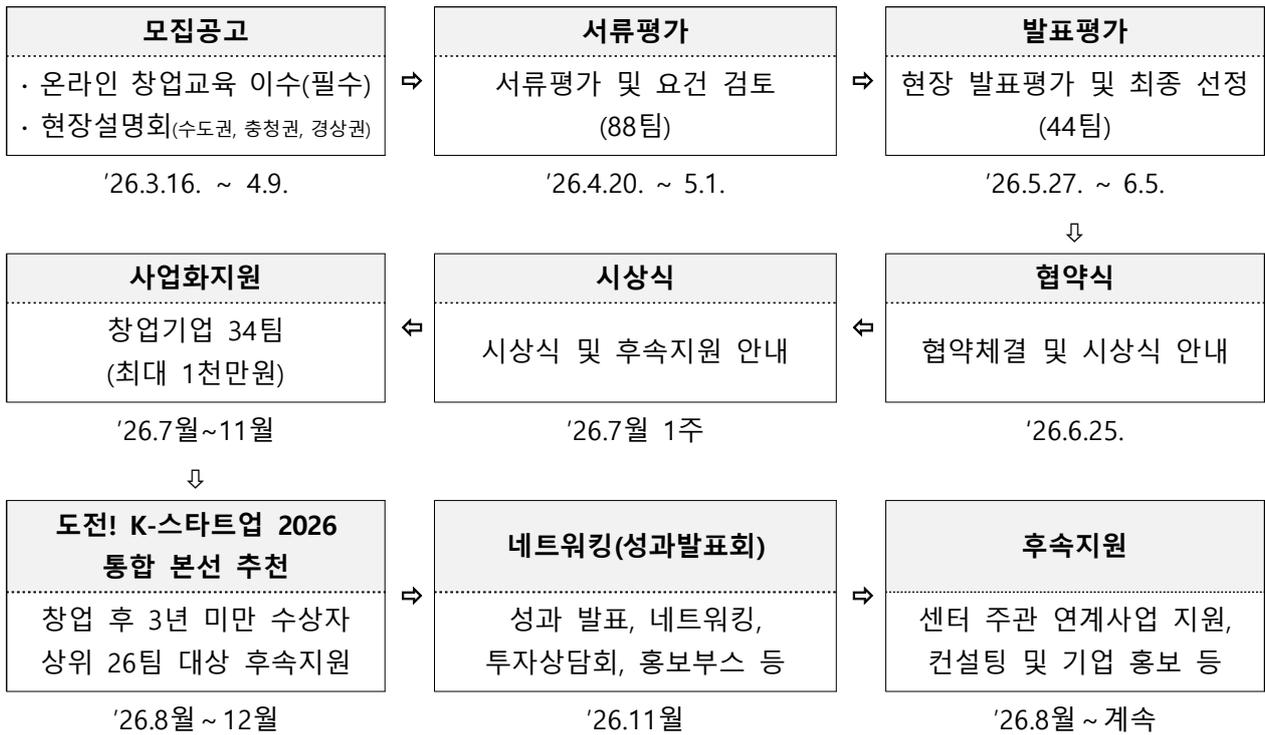
## 2 참가자격 및 신청.접수

□ 참가자격

- 공고일('26.3.16) 기준
  - 창업 후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팀
  - 예비창업팀은 경진대회 평가 종료일까지 예비창업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참가 자격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인 자</li> <l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li> <li>•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5”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li> <li>•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li> <li>*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li> <li>*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팀원제외),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li> </ul> </li> <li>•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li> </ul>

## □ 추진일정(안)



## □ 현장설명회

- 여성창업경진대회 설명회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창업 교육
  - 위치: 수도권(서울), 충청권(천안), 경상권(대구) 예정
  - \* 세부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전 신청 접수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
  - 일자: 2026. 3. 23.(월) ~ 4. 3.(금)
  - 일정(안)

구분	주요내용
경진대회 설명회('40)	· 대회 신청 방법 안내 및 심사 기준 등 · 질의응답
창업 교육('40)	· 여성창업경진대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 교육 이수증 발급(온라인 교육 대체 인정)
창업 특강('40)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선배 창업자 사례 - 창업 교육 이수증 발급(온라인 교육 대체 인정)

□ 신청·접수

- (사전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선배 수상자 강의(1개) 수료

구분	교육이수
창업자	· 창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선배 수상자 강의(1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선배 수상자 강의(1개)

- 교육기간: 2026. 3. 23.(월) ~ 4. 9.(목)
- 수강방법: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지사항 참조
- 참가자는 사전교육 이수 완료 후 수료증을 발급(다운로드) 받아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시 경진대회 평가에서 제외)

- (신청기간) 2026. 3. 23.(월) ~ 4. 9.(목) 15:00 까지

-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2~3일 전에 사전 접수 권장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링크 :

<세부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www.) 접속 및 회원가입 → ②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 탭 클릭  
 → ③ 좌측 지원사업 목록 릿 → ④ 국업 경진대회 클릭 → ⑤ 경진대회 페이지 중앙 우측의 사업신청 클릭  
 → ⑥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 ⑦ 제출(마감일 전까지 수정 가능)  
 \* 시스템 "신청완료" 까지 완료되어야 제출 완료됨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신분증, 총사업자등록내역 등 각종 필수제출 서류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3

## 평가 및 선정

###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표평가 대상 88개 기업(팀) 내외 선발
- (발표평가) IR 피칭 및 질의응답을 통해 44개 기업(팀) 선정

#### <경진대회 평가지표(안)>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 혁신성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기술 완성도	30
	기존 제품·서비스 대비 기술적·기능적 차별성	
사업성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성과	30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성장전략	중장기 성장 계획	20
	자금 운용 계획	
창업역량	창업자와 팀 구성원의 역량	20
	기업 실적 및 기반 역량	

### □ 평가 가점 항목

- 가점 증빙자료 제출 시 서면 평가에만 적용(최대 5점)

#### <가점 항목>

평가 항목	배점
「팜테크, 여성 케어, K-뷰티」 전문기술분야 신청 창업기업	2
최근 3년 이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관 수상자	2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중 1개 이상 선정기업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배달의민족 추천을 받은 기업	1

### □ 수상기업(팀) 선정

- 동점자는 지표별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선별
- 사업성 → 기술혁신성 → 성장전략 → 창업역량

## 4

## 시상 및 지원

### □ 시상내역

- (시상훈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6점, 은행장상(신한, IBK기업) 8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30점
- (시상내역) 44개 기업(팀) 대상 총 11,000만원 포상

#### < 시상규모(안) >

구분	훈격	상금(만원)	창업기업(팀)	예비창업(팀)
대상	중기부 장관상	2,000	1	-
최우수상	중기부 장관상	각 1,000	1	1
우수상	중기부 장관상	각 500	2	1
장려상	신한은행장, 기업은행장	각 500	6	2
입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각 50	24	6
합계		<b>11,000</b>	<b>34</b>	<b>10</b>

###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창업기업(팀) 대상 최고 10백만원~최저 3백만원 차등 지원
- (성과공유회) 우수기업 성과 발표, 홍보부스, 네트워킹, 투자상담회 등
- (언론홍보) 언론보도 및 미디어 홍보 지원 등
- “도전! K-스타트업 2026” 본선 진출자 후속지원
- “2026년 컴업(COMUP)” 행사 기업홍보 부스 참가 기회 부여

### □ 후속 연계지원

- 전국 18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지원시 가점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시 가점
- 창업진흥원 패키지사업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 및 수상팀 서류심사 면제 및 우선 선정(2026년 기준 패키지 사업공고 준용)

문의처

- (전화) 02-369-0911
- (메일) w-startupaward@wbiz.or.kr
- (홈페이지) <https://www.wbiz.or.kr>(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업아님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창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구 분	목 록	비 고
참가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 창업아이템, 기술분야 등 일반현황과 세부정보 등 기재</li> </ul>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아이템 요약,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창업역량 등 기재</li> <li>- 요약 포함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증빙 및 기타 추가 제출서류 제한 없음)</li> </ul>	필수
자격요건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기업의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사본</li>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가림 처리)</li> </ul> </li> </ul>	예비창업(팀) 신청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창업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의 경우, 통합공고일('26.3.16.) 이후 발급본 제출</li> <li>** 팀원의 경우,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li> <li>*** 발급절차 :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발급시간 3시간 내외 소요)</li> </ul> </li> <li>- 팀장·팀원 사실증명원내 보유 사업장 '<u>사업자등록증</u>'</li> <li>- 팀장·팀원 사실증명원내 폐업 사업장 '<u>폐업사실증명원</u>'</li> <li>-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기업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공고일('26.3.16.) 이후 발급본 제출</li> <li>** 공동·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li> <li>*** 발급절차 :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발급시간 3시간 내외 소요)</li> </ul> </li> <li>- 대표자 사실증명원내 보유 사업장 '<u>사업자등록증</u>, '<u>법인등기부등본</u>'</li> <li>- 대표자 사실증명원내 폐업 사업장 '<u>폐업사실증명원</u>'</li> <li>- 4대보험 가입자명부(팀원 확인용,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li> <li>-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ul> </li> </ul>	창업기업 신청자  필수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 부여 증빙서류</li> </ul>	
기타 증빙서류	<p>※ 사업계획서 내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지재권 실적을 작성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li> <li>• (수출)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계약서 등</li> <li>•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li> <li>•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li> <li>•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 등</li> </ul>	선택

## 여성창업경진대회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안)

- ※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페이지는 삭제하고 제출
- ※ HWP 원본 한글파일과 PDF 변환 파일 제출
- ※ 참가신청를 제외하고 10페이지, 파일크기 10MB이하 이내로 작성
- ※ 증빙서류는 15페이지, 파일크기 30MB이하 이내로 작성(주요실적만 제출)
-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변경·삭제할 수 없으며, 추가설명을 위한 이미지(사진), 표 등은 삽입 가능  
(표 안의 행은 추가 가능하며, 해당 없을 시 공란을 유지)
- ※ 본문 내 '파란색 글씨로 작성된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항목	세부항목
참가신청서	- 창업아이템명, 산출물, 대표자 및 팀원 등 일반현황

창업아이템 개요	- 창업아이템 소개, 차별성, 시장성 및 기대효과, 추진계획 등
1. 기술혁신성 (Technological Innovation)	1-1. 창업아이템의 필요성 및 기술 완성도 1-2. 기존 제품·서비스 대비 기술적·기능적 차별성
2. 사업성 (Solution & Business Model)	2-1.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성과 2-2. 창업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3-1. 중장기 성장 계획 3-2. 자금운영 계획
4. 창업역량 (Team)	4-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4-2. 보유 인프라 등 활용 계획 4-3. 수상이력 사항 4-4. 투자유치 사항



## 「2026년 제27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사업계획서

아이템명	
개요	※ 해당 아이템의 제품·서비스 개요(핵심 기능·성능 등)
차별성	※ 기업에서 해당아이템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목표 및 추진 일정 등 기재
시장성 및 기대효과	※ 지속 가능한 매출 발생 경로 및 비즈니스 모델(BM) 상세 기술
추진 계획	※ 제품·서비스의 개선·고도화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해 협약기간 내 추진하려는 달성 가능한 목표 및 상세 추진 일정 등 기재
대표 이미지	※ 이미지 시안 또는 설계도

# 1. 기술혁신성 (Technological Innovation)

## 1-1. 창업아이템의 필요성 및 기술 완성도

- ※ 창업아이템(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배경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 동기 등을 제시
  - ①외부적 배경 및 동기(예 : 사회·경제·기술적 관점,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기회 등),
  - ②내부적 배경 및 동기(예 : 대표자 경험, 가치관, 비전 등의 관점)
- ※ 배경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필요성, 제품·서비스를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하려는 목적 기재

○

—

—

○

—

—

## 1-2. 기존 제품·서비스 대비 기술적·기능적 차별성

- ※ 창업아이템(제품·서비스)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배경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 동기 등을 제시
  - ①외부적 배경 및 동기(예 : 사회·경제·기술적 관점,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기회 등),
  - ②내부적 배경 및 동기(예 : 대표자 경험, 가치관, 비전 등의 관점)
- ※ 배경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필요성, 제품·서비스를 개선·고도화 또는 신규 출시 하려는 목적 기재

○

—

—

○

—

## 2. 사업성 (Solution & Business Model)

### 2-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전략 및 성과

- ※ 목표 시장(고객) 요구사항 등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핵심 기능·성능, 디자인 개선, 기타 사업화 활동 등 구체적인 개선·고도화, 신규 출시 방안 등 기재
- ※ 기존 시장 내 경쟁사 제품·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자사의 보유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차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기재

- 
- 
- 
- 

#### < 내수시장 매출 실적 >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	2023.2.14.~2025.2.22.		000백만원
...			

#### < 글로벌시장 매출 실적 >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000백만원	00개	000, 000, 000
...			

### 2-2. 창업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 기능·효용·성분·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재(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

- 
- 
- 
- 
-

### 3. 성장전략 (Scale-up)

#### 3-1. 중장기 성장 계획

- ※ 자금의 필요성, 필요자금의 조달계획 기재(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작성)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기재
  - 인수합병(M&A)를 통한 사업확장 또는 출구전략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기재
  -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중장기 전략을 기재
  - R&D,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통한 자금 확보전략 등

○

—

#### 3-1. 자금운용 계획

- ※ 자금의 필요성, 필요자금의 조달계획 기재(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작성)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기재
  - 인수합병(M&A)를 통한 사업확장 또는 출구전략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기재
  -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중장기 전략을 기재
  - R&D,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통한 자금 확보전략 등

○

—

## 4. 창업역량 (Team)

### 4-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창업아이템(제품 및 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전문성), 동종업계 경험, 창업/투자관련 주요사항 등 기재

—

—

#### ○ 팀원 현황 및 역량 ※ 팀원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전공)	주요경력 및 학력
1	CEO	○○○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2	CSO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	CTO		R&D	○○연구원 경력 10년

### 4-2. 보유 인프라 등 활용 계획

○

—

< 산업재산권 관련 보유 사항\_‘등록’ 사항만 작성, 리스트에는 최대 3건만 기재 >

순번	유형	산업재산권명	등록번호	등록일
1	특허	블록체인 기반의 ooo 기능이 있는 ooo 시스템		
2				
3				

○

—

—

### 4-3. 수상이력 사항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 기창업자는 기업 및 대표자 수상 내역 해당  
 ※ 사업화지원금이 아닌 상금만 기재(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의 수혜내역 제외)

수상일	수상자	대회명	주최기관	훈격	상금(천원)
		○○ 경진대회		○○ 장관상	5,000

### 4-4. 투자유치 사항

※ 기업의 투자이력 사항 기재

투자유치일	투자금액 (천원)	투자기관	비고
20.02.14.	50,000	해당 투자사 전부기재	
		대외비 (대외비인 경우 평가용으로만 활용)	

## 자격요건 증빙서류 (서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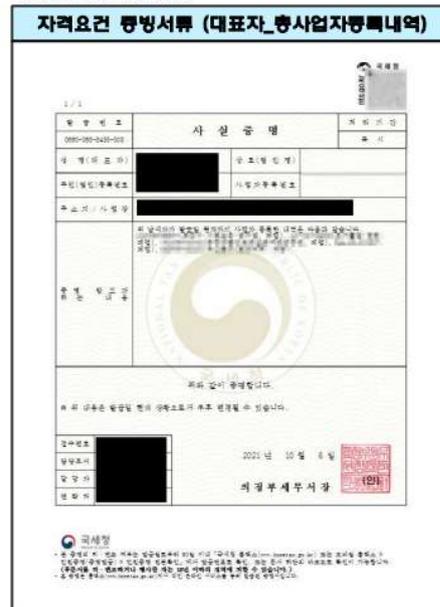
### 증빙서류(공통)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상단 제목 서류명에 제출 증빙서류명 작성(예: 자격요건 증빙서류(주민등록증))

[별지 1호] 자격요건 증빙서류(공통)



[별지 1호] 자격요건 증빙서류(공통)



- 대표자(팀장) 신분증 사본 (필수)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필수)

- \* 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

- \*\* 예비창업자(팀)이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할 경우,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5년 이전증명 포함)’로 제출 가능

-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